

2021년 9월 7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월 7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9. 6.(월)	담당부서	규제샌드박스팀
담당과장	우성훈 팀장(044-203-4520)	담당자	박성환 사무관(044-203-4528)

**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**  
-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 
- 법령정비 요청제, 임시허가 전환 등 제도개선 사항 시행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'21.9.7(화) 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·의결되어 9.16(목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.

□ '19년 규제 유예(샌드박스) 제도 시행('19.1.17)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,

○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.

○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와 임시허가 전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산업융합 촉진법」 개정(21.6.15 공포, 9.16 시행)에 따른 후속조치로,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과 법령정비 요청 등 관련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'21.9.16.에 시행되는 법 및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(법령정비 요청) 실증특례 사업자가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 행정기관(규제부처)의 장에게 요청

- 법령정비 판단절차 진행 중에는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

· (실증특례 사업자) 주관부처(산업부)와 규제부처에 요청서 제출 → (산업부) 법령정비 절차 진행 중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음을 통지

② (법령정비 검토절차)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에 따른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

- 법령정비 필요여부 검토시 해당 신제품·서비스 관련 이용자 편익, 손해 발생여부, 시장성·과급효과 등 고려

\* (규제부처) 법령정비 판단결과 규제특례심의위 보고 → (산업부) 판단결과 통지서 발급

※ 법령정비 판단결과에 대해 규제부처와 산업부가 이견시,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 요청

③ (임시허가 전환)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한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\* 근거 및 절차 마련

\* 단, 다른 법률에서 명백하게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

- 임시허가로 전환시, 임시허가는 유효기간 내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법령정비 완료시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므로 사업중단 우려가 해소

□ 산업부는 제도개선 사항이 원활히 시행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.

○ 법령정비 요청절차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, 승인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기업들에게 금번 제도개선 사항 및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 박성환 사무관(☎ 044-203-452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